

상임위	법안명	주요내용	추진현황
1	<b>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b>  (홍석준, 2124495) (구자근, 2124904)	<b>지역 특화형 브랜드산단 조성 추진</b>  지방정부와 민간(앵커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 산단별 고유 브랜드화 전략 수립하여 지역주민이 찾고 즐기는 테마공간으로 조성	상임위 회부 (23.9.18) *홍석준 안  상임위 회부 (23.10.4) *구자근 안
		<b>지역별 차별화된 산단 혁신정책 추진</b>  - 지방정부는 지역산업 육성전략 등을 기반으로 지역 내 산단의 산업 고도화 및 공간혁신 마스터플랜*을 수립·추진  * 지역산업 육성전략, 입주업종의 첨단화·고부가가치화 방안, 토지이용계획, 교통인프라 등 기반시설확충 방안, 근로자 생활·문화환경 개선사항 등  - 지방정부는 마스터플랜에 따라 산단 고도화 혁신사업 등을 선정·제시하고 중앙정부는 컨설팅 및 우선사업 지원	
		<b>재생사업 토지용도 변경시 개발이익 중복환수 폐지</b>  [기존] 기반시설 재투자로 환수+관리기본계획 반영시 추가 환수  [개선] 재투자로 환수한 경우 추가 환수 면제	
		<b>구조고도화사업 면적과 대상산단 확대</b>  [기존] 산단 전체면적의 10% → 30%  [개선] 국가·일반산단만 → 농공단지와 도시첨단산단 추가	
		<b>연접 입주기업체에 대한 산업용지 임대 근거 마련</b>  [기존] '공장용지+공장'으로만 임대차 가능  [개선] 공장증설과 부대시설을 위한 연접기업의 공장 용지 임차 허용	

상임위	법안명	주요내용	추진현황
		<p><b>기업의 산단 내 자산 유동화를 통한 신산업 투자재원 확보 지원</b></p> <p>비수도권 산업단지내 공장(용지 포함)을 금융·부동산 투자회사 등에 매각후 임대(Sale &amp; Leaseback)하는 자산유동화 허용*</p> <p>* 임차기간 보장, 우선 매수권 부여 등으로 안정적 기업활동은 보장하고, 지가상승 이익을 환수하여 산단내 재투자하는 등 투기수요는 차단</p>	
		<p><b>업종특례지구 신청요건 완화 및 대상 확대</b></p> <p>[기준] 토지소유자 동의 3/4 → 2/3, 최소면적 15만㎡ → 10만㎡</p> <p>[개선] 산업시설용지만 가능 → 산업시설용지 + 복합용지 추가</p>	
		<p><b>업종 분류가 불분명한 신산업의 입주가능 여부 신속 판단</b></p> <p>[기준] 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입주가능 여부가 결정되나 신산업은 불명확</p> <p>[개선] 전문가 참여 위원회 설치·운영으로 신속·명확한 판단 지원</p> <p>* L社 열분해유 공장은 기타석유정제품재처리업(C19)과 기타화학제품제조업(C20) 중 어느 업종인지 불명확하여 전문가 회의 등을 거쳐 업종을 결정하여 산단 입주 허용('22.6)</p>	
		<p><b>업종이 다른 경우 기반시설 영향 확인절차 도입으로 신속한 입주 결정</b></p> <p>[기준] 기반시설 영향 확인 절차 부재로 입주여부 불명확</p> <p>[개선] 관리기관이 신속히 확인하는 절차* 마련</p> <p>* 기업의 입주신청 → 관리기관이 전문가 참여 위원회 등을 통해 입주여부 확인</p>	
		<p><b>관리기관이 산단 입주업종에 대한 주기적 재검토 제도 신설</b></p> <p>관리기관*이 산단 입주업종에 대한 주기적 재검토 제도 신설</p> <p>* 국가산단 : 산업단지공단 / 일반산단·도시첨단·농공단지 등 : 시·군·구, 개별 관리공단 등</p> <p>- 산단 조성시 결정된 입주업종을 준공후 10년부터 5년마다 재검토하여 산업·기술 환경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p>	

상임위		법안명	주요내용	추진현황
2	국토	<b>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b> (☎홍석준, 2124496)	<b>재생사업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 명확화</b> [기존] 재생사업지구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기간 불분명 [개선] 재생사업지구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기간을 5년 이내로 명확히 하여 지역별 지정기간 차이에 따른 투자자 혼란 예방	<b>상임위 회부</b> (23.9.18)
			<b>복합용지 신설 절차 간소화</b> [기존] 토지용도 신설 시 소규모 면적이더라도 개발계획 변경 필요 [개선] 복합용지 신설 시, 복합용지를 구성하는 산업·지원용지의 증감으로 면적 산정하여 개발계획 변경 불요	
			<b>개발계획 변경 없이 토지용도 전환이 가능한 면적 규모 대폭 확대</b> [기존] 토지용도별 10% & 3만㎡ 미만 용도변경은 개발계획 변경 없이 가능 [개선] 330만㎡ 이상 산단은 10% & 10만㎡까지 개발계획 변경 없이 가능	
3	환노	<b>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b> (☎임이자, 2124532)	<b>외국인 근로자 장기 근속 특례 도입</b> [기존] 비전문인력 외국인근로자(E-9)는 체류기간 만료 후 귀국, 숙련가능인력(E-7-4, 법무부) 전환 시 장기체류 가능 * 소득, 연령, 학력, 경력 등 종합 고려→고수준 숙련 요구 [개선] 비전문인력 대상 장기근속 특례를 신설하여 업무숙련도가 높은 준숙련인력을 양성·활용 * 동일사업장 근무경력, 어학능력 등 충족	<b>상임위 회부</b> (23.9.19)
			<b>외국인 유학생(D-2)의 외국인근로자(E-9) 활용 허용</b> [기존] 외국인유학생(D-2)은 외국인근로자(E-9)으로 활용 불가 [개선] 외국인유학생(D-2)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국내 대학을 졸업하고 전문인력(E1~E7)으로 구직활동 하였으나, 취업하지 못해 외국인근로자(E-9)으로 취업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요건 만족시 일반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로 활용	
4	환노	<b>환경영향평가법</b> (☎정희용, 2123697) (☎임이자, 2121031) (☎김성원, 2123026)	<b>긴급 재난대응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면제</b> [기존] 재난안전법 제37조에 따른 응급조치는 평가 등이 제외되나, 한정된 사업범위, 관련 행정절차 등으로 대응에 한계 [개선]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안전관리를 위해 긴급한 수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사업은 평가 제외	<b>상임위 회부</b> (23.8.9) *정희용 안  <b>상임위 소위원회</b> (23.5.24) *임이자 안

상임위		법안명	주요내용	추진현황
			<p><b>과도한 보안 요구 이의신청 절차 도입</b></p> <p>[기존] 현실 여건에 맞지 않는 과도한 보안 요구 등에 대해 불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음</p> <p>[개선]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보안, 조정 요청에 대해 이의신청할 수 있는 근거 신설</p>	
5	환노	<p><b>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b> (☎임이자, 2123840)</p>	<p><b>유독물질 지정관리체계 개편</b></p> <p>[기존] 급·만성독성, 액체·고체 등 물질 특성과 관계없이 유독물질 취급사업장에 시설기준 등 화관법상 규정을 획일적으로 적용하여 산업계 부담</p> <p>[개선] 유독물질을 급성·만성·생태독성으로 구별 지정하고, 유해성·취급량 등을 고려하여 관리 형태·수준 등 차별화</p> <p>* 급성독성은 화학사고 관리, 만성독성은 인체노출저감 및 생태독성은 환경배출관리에 집중</p> <p>※ <b>화관법 하위법령 개정</b>을 조치사항으로 하는 과제 - 기업의 등록비용 부담 개선</p>	<p><b>상임위 회부</b> (23.8.17)</p>
6	환노	<p><b>화학물질관리법</b> (☎임이자, 2123874)</p>	<p><b>화관법·폐관법 중복 적용 해소 - 화관법</b></p> <p>[기존] 유해화학물질이 포함된 폐기물은 유해화학물질로서 화학물질관리법 적용 대상이며, 폐기물로서 폐기물관리법의 관리대상으로 중복 규제 적용</p> <p>[개선] 제도 간 중복 해소 및 유해화학물질 포함 폐기물의 합리적 관리를 위한 「화관법」 및 「폐관법」 개정*</p> <p>* (검토방향) ①「화관법」 관리대상에서 제외, ②「폐관법」 하위법령 개정으로 안전관리 보완, ③ 화학사고 대응 등 「화관법」으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지속 적용</p>	<p><b>상임위 회부</b> (23.8.21)</p>

## 법사위 계류 중 입법과제 법안 목록(17개)

상임위		법안명	주요내용	추진현황
1	농해수	<b>해양경비법</b> (☎정점식, 2110005) * 국정과제 공통법안	<b>신기술 활용 광역해양정보망 구축 및 경비체계 고도화</b> [기존] 인공위성·무인기·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기술 도입 지연으로 위험예측정보 제공에 한계 [개선] 해양경비정보 융합·분석을 통한 인공지능(AI) 기반 해양경비정보분석시스템을 개발하고 위험예측정보 제공 추진	<b>법사위 상정</b> (23.5.24)
2	국토	<b>국토통합교통체계 효율화법</b> (㉠김수흥, 2119200)	<b>복합환승센터 사업 승인 시 여객터미널 공사시행 인가 의제</b> [기존] 복합환승센터 내에 여객터미널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라도 관련법의 이원화로 복합환승센터 개발실시계획 승인과 여객터미널 공사시행 인가를 모두 받아야 하는 행정의 비효율과 불편이 있는 실정 [개선]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 승인·변경승인 시 여객터미널 공사시행 인가에 대해 관계행정기관과 미리 협의한 경우 공사시행 인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력 낭비 및 불편사항 개선	<b>법사위 회부</b> (23.5.24)
3	국토	<b>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법</b> (대안, DD11248) * 국정과제 공통법안	<b>무인배송 법제화</b> [기존] 생활물류법 상 택배·소화물 배송대행사업의 운송수단이 이륜차 및 화물차로 제한됨에 따라 드론·로봇과 같은 新운송수단 활용 제한 [개선] 드론, 로봇을 생활물류법 상 생활물류 서비스 운송수단으로 포함하여 물류서비스 생산성 향상 및 신산업 육성 지원	<b>법사위 상정</b> (23.7.26)
4	국토	<b>자율주행자동차법</b> (☎정동만, 2119217)	<b>자율주행 수요 응답형 여객 자동차의 운송 사업 범위 확대</b> [기존]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내에서 승객들의 목적지에 따라 실시간으로 경로를 설정하는 자율주행 셔틀서비스를 운영하려고 하나, 서비스 허용여부 및 허가권자가 불분명 [개선] 목적지에 따라 실시간으로 경로를 설정하는 셔틀서비스는 구역형 여객운송사업으로 보아야 하며, 구역형에 대해 허가권자를 국토부 → 시·도지사로 확대토록 개선하여 서비스 허용	<b>법사위 회부</b> (23.5.24)
5	국토	<b>주차장법</b> (대안, DD11247)	<b>카셰어링 전용주차구획 설치 허용</b> [기존] 공영주차장(노상·노외) 내 카셰어링 전용주차구획 설치를 위한 법률상 근거가 없어 수도권 등 일부 지자체만 조례로 허용 [개선] 주차장법상 카셰어링 전용주차구획 설치 근거 도입	<b>법사위 상정</b> (23.8.23)

상임위		법안명	주요내용	추진현황
6	산 중	<b>경제자유구역법</b> (☎한무경, 2118606)	<b>외국인투자기업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국공유재산 임대 허용</b>  [기존] 경자법에 따라 입주한 외국인 투자기업은 특수관계인에게 수의계약으로 취득한 국공유재산을 임대 등으로 제공할 수 없음  [개선] 특수관계인이 외투기업인 경우, 취득한 국공유재산의 임대 등 제공을 허용 <b>경자구역 동일부지 내 외투기업과 관계회사(외투기업) 간 시설의 통합 운영 허용</b>  [기존] 경제자유구역 부지매입계약 주체인 외투기업은 그의 특수관계인에게 부지 제공이 불가  [개선] 경자구역 동일 부지 내 외투기업과 관계회사(외투기업)간 시설의 통합 운영 허용	<b>법사위 상정</b> (23.9.1)
7	기 재	<b>조달사업법</b> (대안, DD11373)	<b>조달통계 개편</b>  [기존] 부처별(조달청·중기부) 상이한 집계방식 및 중복 발표로 통계의 통일성 저하 및 정책적 활용 혼선 초래  [개선] 조달통계를 통합하여 조달청이 계약·지출통계 집계를 일괄 수행(조달사업법 개정), 관련 시스템 개편 추진	<b>법사위 회부</b> (23.8.24)
8	문 체	<b>문화재보호법</b> (대안, DD11348)	<b>문화재 국외반출 규제 개선</b>  [기존] 원칙적으로는 문화재의 국외반출은 금지되어 있으며, 국외전시 등 국제적 문화교류를 위한 국외반출만 가능  [개선] 국외전시 외 교육, 연구 목적의 국외반출도 가능하도록 개선	<b>법사위 회부</b> (23.7.7)
9	과 방	<b>소프트웨어진흥법</b> (☎박성중, 2119311)	<b>민간투자형 SW 사업 절차 개선</b>  [기존] 민간투자형 SW사업 추진 시, 공공이 미래에 민간에게 지급해야 하는 예산에 대한 확정 절차 미비로 민간에 부담 발생  [개선] 장래에 공공이 민간에게 지급해야 할 예산을 국회 의결을 통해 미리 확정하는 절차 마련	<b>법사위 회부</b> (23.9.21)
10	과 방	<b>전파법</b> (대안, DD11430)	<b>LED 조명기기 기업이 스스로 전자파 적합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부담 완화</b>  [기존] LED 조명기기는 전파환경 위해 정도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지정시험기관의 전자파 적합성 시험을 거쳐야만 제품 출시가 가능  [개선] 기업 스스로 적합성 확인 후 제품 출시가 가능한 '자기적합선언 제도'를 도입	<b>법사위 회부</b> (23.9.21)
11	과 방	<b>정보통신망법</b> (대안, DD11428)	<b>CI 일괄변환 제도화(행정공공기관 모바일 전자고지)</b>  [기존] 모바일 전자고지서비스 사업자인 플랫폼 기업들은 주민번호를 연계정보(CI)로 일괄 변환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서비스제공에 한계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대신 사용되는 고유번호  [개선] 주민등록번호를 CI로 일괄변환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	<b>법사위 회부</b> (23.9.21)

상임위		법안명	주요내용	추진현황
12	국방	<b>방위사업법</b> (대안, DD11456)	<b>경제형별규정 개선(2차)</b> 방산업체가 불가피한 사유로 휴·폐업한 경우  승인이 아닌 신고로 완화,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b>법사위 회부</b> (23.11.1)
13	복지	<b>건강기능식품법</b> (대안, DD11404)	<b>GMP 운영 우수업체 차등관리제 도입</b> (☎한정애, 2119700)  [기존] 건강기능식품 전문 제조업체 대상 우수 건강기능식품 제조 기준(GMP) 준수 의무를 부과('18.12~)하고, 불시평가 등 도입('20.1~)  [개선] 정기 조사·평가 결과 우수업소의 경우 자체평가로 정기 조사·평가 면제	<b>법사위 회부</b> (23.9.21)
14			<b>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소분판매 도입</b> (☎강기윤, 2118536)  [기존] 판매업소의 건강기능식품 소분 판매 금지  [개선]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소분판매를 위한 영업신설, 시설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등 법률 근거 마련	
15	과방	<b>통신비밀보호법</b> (☎허은아, 2118840)	<b>(1차 경제형별) 전기통신사업자가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현황을 보고하지 않거나 관련자료를 비치하지 않은 경우</b>  [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개선] 선 행정명령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하고, 시정명령 불이행시 형사처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b>법사위 회부</b> (23.9.21)
16	농해수	<b>민간해양구조대법</b> (대안, DD11464)	<b>민간 구조참여 보상 확대</b>  [기존] 해양구조·구난 등에 민간세력 동원 시 위험성과 손실 발생을 감수하면서 구조에 참여했음에도 보상, 대우 미흡  [개선] 민간의 구조·구난 등 참여에 따른 조업중단, 유류소모, 장비손상 등에 대한 합당한 보상과 예우를 위한 지원으로 국민 참여 확대(처우 개선)	<b>법사위 회부</b> (23.11.8)
17	농해수	<b>자율운항선박법</b> <small>제정</small> (대안, DD11463)  <small>* 국정과제 공통법안</small>	<b>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 및 상용화 기반 마련</b>  [기존] 자율운항선박 관련 법령 부재  [개선] 실증특례, 상용화 지원 등 내용이 담긴 자율운항선박법 제정	<b>법사위 회부</b> (23.11.8)

## 상임위 계류 중 입법과제 법안 목록(121개)

상임위		법안명	주요내용	추진현황
1	법사	<b>전자어음법</b> (정부, 2122306)	<b>경제형벌규정 개선(2차)</b> 전자어음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기피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신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상임위 회부 (23.5.30)
2	산중	<b>1인창조기업법</b> (☞홍석준, 2106915)	<b>1인 창조기업 제외업종 개편</b> [기준] ICT 기술을 활용한 도매업·유통업 등을 영위하는 1인 사업자가 등장하고 있으나 1인 창조기업 인정범위에서 제외 * 도매업, 소매업, 숙박업, 금융업, 스포츠 및 오락 관련 서비스업 등 32개 업종 제외 [개선] 환경 변화, 업종별 창의성·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1인 창조기업 제외업종 축소 추진	상임위 소위 상정 (22.5.4)
3	산중	<b>광산피해방지법</b> (정부, 2119553)	<b>사업소의 업무관련 장부, 서류, 기타물건 검사를 거부, 방해 회피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 (1차)</b> [기준] 사업소의 업무관련 장부, 서류, 기타물건 검사를 거부, 방해 회피 시 형벌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개선] 사업소의 업무관련 장부, 서류, 기타물건 검사를 거부, 방해 회피시 과태료 (500만원 이하) 로 전환	상임위 소위 상정 (23.3.16)
4	산중	<b>도시가스사업법</b> (정부, 2119549)	<b>회계기준에 따르지 않고 회계처리를 하거나 도시가스사업 회계와 다른 회계를 분리하지 않은 경우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 (1차)</b> [기준] 회계기준에 따르지 않고 회계처리를 하거나 도시가스사업 회계와 다른 회계를 분리하지 않은 경우 형벌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개선] 회계기준에 따르지 않고 회계처리를 하거나 도시가스사업 회계와 다른 회계를 분리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1천만원 이하)로 전환	상임위 소위 상정 (23.3.16)
5	산중	<b>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b> (정부, 2119550)	<b>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원산지표시 대상물품의 수출·수입 등 관련 미수범을 기수범에 준하여 처벌하는 조항을 삭제 (1차)</b> [기준]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원산지표시 대상물품의 수출·수입 등 관련 미수범을 기수범에 준하여 처벌 [개선]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원산지표시 대상물품의 수출·수입 등 관련 미수범을 기수범에 준하여 처벌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미수범 처벌의 근거만 규정하여 책임주의 관철	상임위 소위 상정 (23.3.16)
6	산중	<b>산업집적활성화법</b> (정부, 2122415)	<b>경제형벌규정 개선(2차)</b> 권한이 없이 지식산업센터의 공유시설 부분을 점용하는 경우 바로 형사 처벌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시정명령 등 행정 조치를 먼저 하도록 함	상임위 상정 (23.7.12)
7	산중	<b>신재생에너지법</b> (☞신영대, 2118134)	<b>풍력발전시설의 주거지·도로와의 이격거리 상한선 마련</b>	상임위 상정 (23.2.9)



상임위		법안명	주요내용	추진현황
			<p>[기존] 지자체별로 주거지 및 도로와의 이격거리를 규정한 조례를 운영 중이나, 이격거리가 크고 지자체별로 편차가 커서 풍력발전 보급동력 약화</p> <p>[개선] 합리적 수준으로 최대 이격거리를 법제화하여 과도한 이격거리를 축소하도록 유도</p>	
8	산 중	<b>유전자변형생물체법</b> (정부, 2116632)  * 국정과제 공통법안	<b>유전자자위산물 위해성 심사 면제</b>  [기존] 신규 유전자변형생물체는 위해도와 관계없이 유전자변형 생물체법에 의한 위해성심사 등 안전관리 규제 대상에 포함되나, 유전자자위기술 산물은 외래유전자가 남지 않는다는 점에서 위해도가 낮아 규제합리화 필요  [개선] 사전 검토제 도입을 통해 안전성 확인 시 위해성 심사, 수입·생산승인 등을 면제하고 필요 정보만 요청	상임위 소위 회부 (22.9.19)
9	산 중	<b>유통산업발전법</b> (☎이종배, 2102201)	<b>대형마트 영업휴무일 온라인 배송 허용</b>  [기존] 대형마트 등의 영업 제한시간에는 온라인 영업도 불가하여 공정한 경쟁을 저해  [개선] 대형마트나 준대규모점포에서 온라인 영업시 의무휴업 및 영업시간 제한에서 제외	상임위 특허소위 상정 (23.8.21)
10	산 중	<b>자유무역지역법</b> (정부, 2119555)	<b>반입·반출이 금지된 물품을 자유무역 지역 안팎으로 반입·반출 관련 예비범을 기수범에 준하여 처벌하는 조항을 개정 (1차)</b>  [기존] 반입·반출이 금지된 물품을 자유무역 지역 안팎으로 반입·반출 관련 예비범을 기수범에 준하여 처벌  [개선] 예비범을 기수범에 준하여 처벌하는 조항을 개정하여 예비범은 기수범의 1/2을 감경하도록 하여 책임주의 관철  <b>입주기업이 자유무역지역에서 사용·소비하기 위해 수입신고·관세 납부 없이 자유무역지역으로 외국물품 반입시 예비범을 기수범에 준하여 처벌하는 조항을 개정</b>  [기존] 수입신고·관세 납부 없이 자유무역지역으로 외국물품 반입시 예비범을 기수범에 준하여 처벌  [개선] 입주기업이 자유무역지역에서 사용·소비하기 위해 입주기업이 자유무역지역에서 사용·소비하기 위해 수입신고·관세 납부 없이 자유무역지역으로 외국물품 반입시 예비범을 기수범에 준하여 처벌하는 조항을 개정하여 예비범은 기수범의 1/2을 감경하도록 하여 책임주의 관철  <b>입주기업이 자기가 직접 사용·소비하기 위해 수입신고·관세 납부 없이 자유무역지역으로 외국물품 반입시 예비범을 기수범에 준하여 처벌하는 조항을 개정 (1차)</b>  [기존] 입주기업이 자기가 직접 사용·소비하기 위해 수입신고·관세 납부 없이 자유무역지역으로 외국물품 반입시 예비범을 기수범에 준하여 처벌  [개선] 입주기업이 자기가 직접 사용·소비하기 위해 수입신고·관세 납부 없이 자유무역지역으로 외국물품 반입시 예비범을 기수범에 준하여 처벌하는 조항을 개정하여 예비범은 기수범의 1/2을 감경하도록 하여 책임주의 관철  <b>입주기업이 수입신고·관세 납부 없이 역외작업에 의하여 가공 또는 보수된 물품을 반출장소에서 반출장소 외의 관세영역으로 반출시 예비범을 기수범에 준하여 처벌하는 조항을 개정 (1차)</b>	상임위 소위회부 (23.3.16)

상임위		법안명	주요내용	추진현황
			<p>[기존] 입주기업이 수입신고·관세 납부 없이 역외작업에 의하여 가공 또는 보수된 물품을 반출장소에서 반출장소 외의 관세영역으로 반출시 예비범을 기수범에 준하여 처벌</p> <p>[개선] 입주기업이 수입신고·관세 납부 없이 역외작업에 의하여 가공 또는 보수된 물품을 반출장소에서 반출장소 외의 관세영역으로 반출시 예비범을 기수범에 준하여 처벌하는 조항을 개정하여 예비범은 기수범의 1/2을 감경하도록 하여 책임주의 관철</p> <p><b>수입신고·관세 납부 없이 외국물품을 자유무역지역에서 관세 영역으로 반출시 예비범을 기수범에 준하여 처벌하는 조항을 개정 (1차)</b></p> <p>[기존] 수입신고·관세 납부 없이 외국물품을 자유무역지역에서 관세 영역으로 반출시 예비범을 기수범에 준하여 처벌</p> <p>[개선] 수입신고·관세 납부 없이 외국물품을 자유무역지역에서 관세 영역으로 반출시 예비범을 기수범에 준하여 처벌하는 조항을 개정하여 예비범은 기수범의 1/2을 감경하도록 하여 책임주의 관철</p> <p><b>비거주자가 국외반출을 목적으로 자유무역지역에 보관하는 일정한 내국물품을 자유무역지역에서 관세영역으로 반출시 예비범을 기수범에 준하여 처벌하는 조항을 개정 (1차)</b></p> <p>[기존] 비거주자가 국외반출을 목적으로 자유무역지역에 보관하는 일정한 내국물품을 자유무역지역에서 관세영역으로 반출시 예비범을 기수범에 준하여 처벌</p> <p>[개선] 비거주자가 국외반출을 목적으로 자유무역지역에 보관하는 일정한 내국물품을 자유무역지역에서 관세영역으로 반출시 예비범을 기수범에 준하여 처벌하는 조항을 개정하여 예비범은 기수범의 1/2을 감경하도록 하여 책임주의 관철</p> <p><b>국외 반출 허가 없이 혹은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물품 등을 국외 반출시 예비범을 기수범에 준하여 처벌하는 조항을 개정 (1차)</b></p> <p>[기존] 국외 반출 허가 없이 혹은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물품 등을 국외 반출시 예비범을 기수범에 준하여 처벌</p> <p>[개선] 국외 반출 허가 없이 혹은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물품 등을 국외 반출시 예비범을 기수범에 준하여 처벌하는 조항을 개정하여 예비범은 기수범의 1/2을 감경하도록 하여 책임주의 관철</p> <p><b>입주기업 외의 자가 수입신고·관세 납부 없이 자유무역지역으로 외국물품 반입시 예비범을 기수범에 준하여 처벌하는 조항을 개정 (1차)</b></p> <p>[기존] 수입신고·관세 납부 없이 자유무역지역으로 외국물품 반입시 예비범을 기수범에 준하여 처벌</p> <p>[개선] 입주기업 외의 자가 입주기업 외의 자가 수입신고·관세 납부 없이 자유무역지역으로 외국물품 반입시 예비범을 기수범에 준하여 처벌하는 조항을 개정하여 예비범은 기수범의 1/2을 감경하도록 하여 책임주의 관철</p>	
11	산 중	<b>전기공사업법</b> (정부, 2122415)	<b>공사업의 합병 등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은 자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감경 (2차)</b>	상임위 소위원회

상임위		법안명	주요내용	추진현황
			<p>[기존] 공사업의 양도 등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은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기공사업법 제7조 제4항 관련)</p> <p>[개선] 사업의 양도 등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은 자에 대한 벌금을 3백만원 이하 과태료 전환</p> <p><b>공사업의 양도 등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은 자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감경 (2차)</b></p> <p>[기존] 공사업의 양도 등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은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기공사업법 제7조 제1항 관련)</p> <p>[개선] 공사업의 양도 등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은 자에 대한 벌금을 3백만원 이하 과태료 전환</p>	(23.7.12)
12	산 중	<b>전기안전관리법</b> (정부, 2122415)	<p><b>경제형벌규정 개선(2차)</b></p> <p>정기검사 거부, 방해 또는 기피 등 법정검사 의무 위반 시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신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p>	상임위 소위원회 (23.7.12)
13	산 중	<b>중소기업기본법</b> (☎정우택, 2116193)  * 국정과제 공통법안	<p><b>중소기업 유예기간 확대</b></p> <p>[기존]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이 되는 경우 3년간 중소기업 지위 유지</p> <p>[개선] 중견기업 진입 후 중소기업 지위 유예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여 중기부담 경감</p>	상임위 소위 상정 (22.11.30)
14	산 중	<b>중소기업진흥법</b> (☎김수흥, 2111736)	<p><b>명문장수기업 지정대상 업종 제한 폐지</b></p> <p>[기존] 건설·금융업 등 4개 업종은 명문장수기업 대상에서 제외</p> <p>[개선] 업종 제한 요건을 모두 삭제</p>	상임위 심의 (23.2.13)
15	산 중	<b>친환경자동차법</b> (☎한무경, 2120857)	<p><b>공공기관 소유부지에 수소충전소 설치 시 임대료 감면 근거 부재</b></p> <p>[기존] 공공기관 소유부지에 수소충전소 설치 시 임대료 감면 근거 부재</p> <p>[개선] 공공기관 등이 소유한 부지를 수소충전소용으로 임대할 경우 일정 범위 내에서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재량규정 신설 추진</p>	상임위 소위 회부 (23.5.11)
16	산 중	<b>특허법</b> (☎황운하, 2120028)	<p><b>거짓특허방지를 위한 특허 무효제도 개선</b></p> <p>[기존] 허위 데이터를 기재하는 등 거짓행위로 특허를 받은 사례 발생, 공정성 문제 제기</p> <p>[개선] 고의로 거짓이나 부정한 행위를 통해 특허받은 경우를 무효사유로 신설</p>	상임위 상정 (23.4.13)
17	산 중	<b>특허법</b> (☎정일영, 2121189)	<p><b>의약품 특허권의 존속기간 연장제도 개선</b></p> <p>[기존] 하나의 의약품 품목허가에 기초하여 의약 관련 모든 특허권의 존속기간 연장이 가능 → 제네릭 의약품 출시 지연</p> <p>[개선] 하나의 의약품 허가에 대해 하나의 특허권만 선택하여 연장할 수 있게 하고, 연장기간을 포함한 존속기간의 상한을 도입</p>	상임위 소위원회 (23.7.12)
18	산 중	<b>해저광물자원개발법</b>	<b>부유식 해상풍력 발전사업 관련 동해가스전 활용을 위한 법률 개정</b>	상임위 소위원회

상임위		법안명	주요내용	추진현황
		(㉔)권명호, 2118304)	[기존] 생산종료된 동해 가스전에 대한 해상풍력 플랫폼 등 다각적 재활용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석유공사는 원상회복 의무가 있어 활용을 위해서는 법률 개정 필요  [개선] 철거비용 및 신규시설 설치비용 절감을 위해 취지 공감, 해양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원상회복 의무 승계규정 등 검토	(23.2.9)
19	복지	<b>공중보건위기대응법</b> (정부, 2122319)	<b>경제형벌규정 개선(2차)</b>  [기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제조 등 실태조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제출요구 기피시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제34조 위반 시) 2백만원 벌금  [개선]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제34조 위반 시 5백만원 이하 과태료 전환	상임위 상정 (23.9.18)
20	복지	<b>생명윤리법</b> (㉓)민형배, 2116347)	<b>인간대상연구 동의요건 개선</b>  [기존] 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연구의 경우, 연구대상자의 동의는 일정 조건을 갖춘 경우 면제되나 대리인의 서면동의를 면제되지 않음  [개선] 연구대상자 뿐 아니라 대리인에게도 연구대상자와 동일한 서면동의 면제조건 적용하여 연구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개선	상임위 소위원회 (22.11.7)
21	복지	<b>식품위생법</b> (정부, 2122340)	<b>(2차 경제형벌) 조리사가 아님에도 조리사라는 명칭을 사용한 자 형량조절</b>  [기존] 제97조 1호(조리사가 아님에도 조리사라는 명칭을 사용한 자)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개선] 제97조 1호(조리사가 아님에도 조리사라는 명칭을 사용한 자) 위반 시 3백만원 이하 벌금 <b>(2차 경제형벌) 승계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영업신고 미신고자 형벌조절</b>  [기존] 식품위생법 제97조 1호 위반(승계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영업승계 미신고한 자)에 자 3년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개선] 식품위생법 제97조 1호 위반(승계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영업승계 미신고한 자)에 자 1년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상임위 상정 (23.9.18)
22	복지	<b>식품위생법</b> (정부, 2118249)	<b>유흥주점 종업원의 위생교육 제외</b>  [기존] 유흥주점 영업 종업원은 의무적으로 매년 식품위생교육을 이수(2시간)해야 하나, 미이수 시 과태료 처분이 어려운 등 실효성 부재 및 형평성 문제  [개선] 위생교육 이수 대상에서 유흥주점 영업 종사자를 제외하도록 개정  * (현재) 영업자, 유흥주점 종사 종업원 → (개선) 영업자	상임위 소위 상정 (23.6.28)
23	복지	<b>식품위생법</b> (정부, 2119748)	<b>(1차 경제형벌) 식품접객업자 등 영업자가 손님을 꺾어서 들이는 행위 형벌부과 대상 제외</b>  [기존] 식품접객업자 등 영업자가 손님을 꺾어서 끌어들이는 행위에 대해(식품위생법 제97조제6호) 3년 이하	상임위 상정 (23.3.23)

상임위		법안명	주요내용	추진현황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개선] 식품접객업자 등 영업자가 손님을 꺾어서 끌어들이는 행위에 대해(식품위생법 제97조제6호) 형벌부과 대상에서 제외	
24	복지	<b>실험동물법</b> (정부, 2122319)	<b>(2차 경제형벌) 동물실험시설 등에 지도감독을 위한 현장조사 거부 등의 경우 과태료 전환</b> [기존] 실험동물법 제31조 2호 위반 시 2백만원 벌금 [개선] 실험동물법 제31조 2호 위반 시 5백만원 이하 과태료 전환	상임위 상정 (23.9.18)
25	복지	<b>아동복지법</b> (☎고민정, 2113942)	<b>학대피해 아동에 대한 비밀전학 절차 마련</b> [기존] 일부 초등학교에서 비밀전학시 보호자 1인의 동의를 요구하여 보호자가 모두 아동학대행위자인 경우 피해 아동 등의 비밀전학 곤란 [개선] 보호자가 모두 아동학대 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등에는 보호자의 동의없이도 비밀전학이 가능토록 개선	상임위 소위원회 (22.4.27)
26	복지	<b>위생용품관리법</b> (정부, 2118193)	<b>위생용품 영업신고 제한 규제 완화</b> [기존] 영업부진 등 위생용품의 안전과 무관한 불가피한 사유로 영업시설을 철거하여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에도 같은 장소에서 6개월, 같은 영업자에 대해 2년간 영업신고 제한 [개선] 영업시설 전부를 철거하여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영업자는 영업신고 제한대상에서 제외	상임위 소위원회 (23.2.9)
27	복지	<b>의료기기법</b> (정부, 2122319)	<b>(2차 경제형벌)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의 제조 등의 내용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명령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전환</b> [기존] 의료기기법 제54조 1호 위반 시 5백만원 벌금 [개선] 의료기기법 제54조 1호 위반 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전환	상임위 상정 (23.9.18)
28	복지	<b>의료기기법</b> (정부, 2112921)	<b>의료기기 영업신고 절차 간소화</b> [기존] 의료기기 판매업 등 폐업 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 등록 말소와 동시에 의료기기법에 따른 폐업신고 필요 [개선] 사업자등록 말소 시 별도의 폐업 신고없이 직권 말소 처리 <b>의료기기 임상시험 승인절차 완화</b> [기존] 퇴행성 질환 진단 솔루션 등 디지털 의료기기는 인체 위해도가 낮은 경우가 많아 의료기기 허가 처리 기간 단축 필요 [개선]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등 위해도가 크지 않은 의료기기는 임상심사시험위원회(IRB)의 심사만 거치고 식약처의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면제하도록 규제개선 추진	상임위 소위 상정 (22.4.27)
29	복지	<b>의료법</b> (☎이종성, 2118012) <b>* 국정과제 공통법안</b>	<b>비대면 진료 /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제도화</b> [기존]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 허용 중이나, 원칙적으로는 의사-환자 간 비대면 진료가 금지되고 있음 [개선] 의료사각지대 해소, 상시적 질병관리 등 보건의	상임위 소위 상정 (23.8.24)

상임위		법안명	주요내용	추진현황
			료 정책적 관점에서 일차 의료기관 중심 의사·환자 간 비대면 진료 제도화 추진	
30	복지	<b>체외진단의료기기법</b> (☎강기윤, 2119256)	<b>체외진단의료기기 임상적 성능시험 지정기관 외 참여 허용</b> [기존] 임상적 성능시험은 지정 기관에서만 실시 의무가 있으나, 코로나19 감염병 등 특수상황 시 임상적 성능시험기관이 아닌 생활치료센터 등에 양성환자가 배정되어 검체 확보에 어려움 초래 [개선] 감염병 등 특수상황 발생시 임상적 성능시험 지정기관 외 기관의 임상적 성능시험 참여 허용	상임위 소위회부 (23.2.9)
31	과방	<b>단말기유통법</b> (정부, 2113949)	<b>단말기 유통점이 지급하는 추가지원금 한도 상향</b> [기존] 단말기유통법상 유통점은 공시 지원금의 15% 범위 내에서만 추가 지원금 지급이 가능하여, 이용자의 단말기 구입 부담 과도 [개선] 유통점이 지급할 수 있는 추가 지원금 한도를 현행 15%에서 30%로 상향	상임위 소위 상정 (22.4.21)
32	과방	<b>메타버스기본법</b> (☎허은아, 2117173) (☎김영식, 2114358)  * 국정과제 공통법안	<b>메타버스 기본법 제정</b> [기존] 메타버스 지원관련 법령 부재로 인해 산업지원 미비, 중복규제 등 논란 발생 [개선] 메타버스 기본법 제정으로 산업지원 근거 마련, 제도적 제약 극복	상임위 소위 의결 (23.2.14) <b>대안반영폐기</b>
33	과방	<b>방송광고판매대행법</b> (☎황보승희, 2117033)  * 국정과제 공통법안	<b>크로스미디어렙 도입</b> [기존] 미디어렙*사는 방송광고 외의 광고 판매가 금지되어, 지상파·중편PP의 경우 타 사업자에 비해 광고유치 제한 * 방송사의 위탁을 받아 광고주에게 광고를 판매해주고 판매대행 수수료를 받는 회사 ** 법상 지상파중편PP는 미디어렙을 통해서만 광고 가능 [개선] 미디어렙사의 방송광고판매영역을 온라인·모바일까지 확대	상임위 소위 회부 (22.11.10)
34	과방	<b>방송법</b> (정부, 2119053)  * 국정과제 공통법안	<b>유료방송 규제개선을 위한 방송법·IPTV법 개정</b> [기존] 현행 규정이 급변하는 미디어환경을 따라가지 못하여 사업자의 자율적 혁신 저해	상임위 소위 회부 (23.2.9)
35	과방	<b>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b> (정부, 2119050)  * 국정과제 공통법안	[개선] IPTV사업자의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소유·겸영 규제 폐지, 계열사 합병시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 등 규제 완화	상임위 소위 회부 (23.2.9)
36	과방	<b>소프트웨어진흥법</b> (정부, 2122316)	<b>(2차 경제형벌) 소프트웨어품질인증의 허위표시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b> [기존] 소프트웨어 품질인증(GS, GoodSoftware)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상임위 회부 (23.5.30)

상임위		법안명	주요내용	추진현황
			<p>[개선]</p> <p>소프트웨어 품질인증(GS, GoodSoftware)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p> <p><b>(2차 경제형벌)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의 허위표시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b></p> <p>[기존]</p> <p>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SP, SoftwareProcess)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p> <p>[개선]</p> <p>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SP, SoftwareProcess)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p>	
37	과방	<p><b>인공지능기본법</b> <small>제정</small></p> <p>(☎윤두현, 2118726)</p> <p>* 국정과제 공통법안</p>	<p><b>인공지능 산업육성 및 신뢰 기반을 위한 기본법 마련</b></p> <p>[기존] 인공지능 산업 육성·규율을 위한 법제 부재로 관련 신산업 진흥 및 신뢰성 확보 한계</p> <p>[개선] 인공지능 기술개발 지원, 기본계획 수립 등 법적 근거 마련으로 산업 육성 및 신뢰성 확보 기반 마련</p>	<p>상임위 소위 의결 (23.2.14)</p> <p>대안반영폐기</p>
38	과방	<p><b>전파법</b></p> <p>(정부, 2122346)</p>	<p><b>경제형벌규정 개선(2차)</b></p> <p>적합성평가를 받지 아니한 기자재를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진열·보관하는 경우</p> <p>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p>	<p>상임위 회부 (23.5.30)</p>
39	환노	<p><b>가축분뇨법</b></p> <p>(정부, 2122332)</p>	<p><b>경제형벌규정 개선(2차)</b></p> <p>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운영자가 기술관리인을 두지 않는 경우</p> <p>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신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p>	<p>상임위 소위원회 (23.9.13)</p>
40	환노	<p><b>고용보험법</b></p> <p>(☎이주환, 2118225)</p>	<p><b>플랫폼종사자 고용보험 적용기준 등 변경</b></p> <p>[기존] 플랫폼종사자(퀵서비스, 대리운전기사) 고용보험 적용 시 특고 직종과 동일하게 사업주 단위로 적용</p> <p>[개선] 플랫폼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시 '플랫폼 단위'로 소득기준(월 80만원 이상) 적용</p>	<p>상임위 상정 (23.2.9)</p>
41	환노	<p><b>고용산재보험료 징수법</b></p> <p>(☎김형동, 2118748)</p>	<p><b>고용·산재 보험관계 성립·소멸 미신고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 개선</b></p> <p>[기존] 보험관계 성립·소멸 미신고·허위신고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p> <p>[개선] 과태료 부과 규정 삭제</p> <p><b>노무제공 사업의 사업주보수총액신고의무 면제</b></p>	<p>상임위 상정 (23.2.9)</p>

상임위		법안명	주요내용	추진현황
			<p>[기존] 노무제공자는 보수총액신고에 의한 보험료 정산의 실익이 크지 않고, 고용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으로 월별 보험료를 부과하는 직종은 월 보수액 신고의무가 없어 보수총액 신고대상이 아님에도 근거 규정 부재로 보수총액 신고</p> <p>[개선]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는 보수총액신고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관련 법개정 추진</p>	
42	환노	<b>대기환경보전법</b> (☎이주환, 2119299)	<b>저공해자동차 보급계획서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의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2차)</b> <p>[기존] 저공해자동차 보급계획서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p> <p>[개선]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p>	상임위 소위원회 (23.3.21)
43	환노	<b>댐건설관리법</b> (☎박대수, 2117204)	<b>경제형벌규정 개선(2차)</b> <p>허가나 동의를 받지 않고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일시사용, 특히 필요한 때에는 나무, 토석 또는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한 자에 대하여</p> <p>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신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p>	상임위 소위 회부 (22.11.17)
			<b>댐 건설사업 시행자의 토지 출입 등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규정 완화</b> <p>[기존] 행정청이 아닌 댐건설사업시행자에 대해 토지 출입·사용 등 위반 행위시 부과하는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의 처벌 규정은 타 법령상의 동일(유사)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규정(과태료 또는 벌금형)과 비교시 과도</p> <p>[개선] 댐 건설사업시 토지출입 등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행정형벌(징역 또는 벌금형)이 아닌 행정질서벌(과태료)로 완화</p>	
			<b>댐 건설사업 수익자부담금가산금산정방식 합리화</b> <p>[기존] 댐건설사업에 따른 "수익자부담금"의 가산금 부과는 고정 정액방식으로 규정되어 부주의로 하루만 연체해도 가산금 총액을 초과함으로써 단기장기 연체자간 형평성 문제 발생</p> <p>[개선] 가산금 산정방식을 1일 단위로 계산하여 부과하는 방식으로 전환</p>	
44	환노	<b>직업안정법</b> (☎임이자, 2118641)  * 국정과제 공통법안	<b>직업소개사업·근로자공급사업 결격사유 합리화</b> <p>[기존] 벌금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직업소개사업·근로자공급사업 불가</p> <p>[개선]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집행유예 종료 후 해당 사업 수행 가능</p>	상임위 소위 회부 (23.2.9)
<b>직업소개사업·근로자공급사업 재창업 제한 기간 합리화</b> <p>[기존] 등록·허가가 취소된 자는 일괄적으로 5년간 재창업 제한</p> <p>[개선] 재창업 제한기간을 공익 침해 정도 및 위반 정도에 따라 차등 규정</p>				



상임위		법안명	주요내용	추진현황
45	환노	<b>화학물질관리법</b> (정부, 2119573)	<b>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로 화학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형벌을 하향 (1차)</b>  [기존]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로 화학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금고나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선] 사망사고에 대하여는 기존 법정형(10년 이하 금고 또는 2억원 이하 벌금) 유지하고, 상해사고 법정형은 7년 이하 금고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으로 개정하여 발생한 피해의 경중을 고려하여 벌칙의 형평성을 제고	상임위 소위원회 (23.03.21)
46	환노	<b>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b> (정부, 2119586)	<b>오염물질을 불법배출하여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상수원을 오염시 형벌을 하향 (1차)</b>  [기존] 오염물질을 불법배출함으로써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상수원을 오염시킴으로써 먹는 물의 사용에 위험을 끼친 자는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선]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하향  <b>오염물질을 불법배출하여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형벌 하향 (1차)</b>  [기존]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선] 사망에 대하여는 기존 법정형(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을 유지하고, 상해 법정형은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으로 하향	상임위 소위원회 (23.3.21)
47	환노	<b>환경영향평가법</b> (☑임이자, 2121031)	<b>스크리닝 제도 단계적 도입</b>  [기존] 계획·사업의 종류·규모 등을 기준으로 평가대상을 법령에 규정하고 있어 지역·사업내용의 특성 고려없이 동일한 평가절차 진행  [개선] 사업내용, 지역특성 등에 대한 환경영향을 추정, 평가 대상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스크리닝 제도 단계적 도입  <b>재협의 기준 합리화</b>  [기존] 평가 협의 후 사업 규모 증가, 일정 기간 사업추진 지연에 따른 환경 영향 및 주변 여건 변화를 고려한 재협의 실시  [개선] 평가협의 후 5년 이내에 승인등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주변 여건변화 정도를 고려하여 재협의 여부 판단	상임위 상정 (23.5.24)
48	환노	<b>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b> (정부, 2122323)	<b>단체 또는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폐기물관리법 제63조의 죄를 범한자로 재범시 대체규율 전환 (2차)</b>  [기존] 제3조부터 제5조까지 또는 제7조의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면제받은 지 3년 내에 제3조제1항, 제4조제3항 또는 제7조의 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선] 형벌조항 폐지 후 동법 또는 타법 내 벌칙·제재조항으로 대체규율 (형법 제35조 누범규정 적용)  <b>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3조제3항의 죄를 범한</b>	상임위 소위원회 (23.9.13)

상임위		법안명	주요내용	추진현황
			<b>자의 재범시 대체규율 전환 (2차)</b> [기존] 제3조부터 제5조까지 또는 제7조의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면제받은 지 3년 내에 제3조제1항, 제4조제3항 또는 제7조의 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선] 형벌조항 폐지 후 동법 또는 타법 내 벌칙·제재조항으로 대체규율(형법 제35조 누범규정 적용) <b>오염물질을 불법배출함으로써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상수원을 오염시킴으로써 먹는 물의 사용에 위험을 끼친자로 재점시 대체규율 전환 (2차)</b> [기존] 제3조부터 제5조까지 또는 제7조의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면제받은 지 3년 내에 제3조제1항, 제4조제3항 또는 제7조의 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선] 형벌조항 폐지 후 동법 또는 타법 내 벌칙·제재조항으로 대체규율(형법 제35조 누범규정 적용)	
49	농해수	<b>국제항해선박법</b> (정부, 2122419)	<b>경제형벌규정 개선(2차)</b> 해양수산부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항만시설 보안료를 징수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신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상임위 상정 (23.9.15)
50	농해수	<b>낙시관리 및 육성법</b> (☎김승수, 2118527)	<b>낙시금지구역 고시기간 내(5년)라도 재조정 허용</b> [기존] 낙시통제구역에 대한 재검토, 해제 등의 절차가 없어 통제구역이 관행적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존재 [개선]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를 위해 낙시통제구역을 지정한 경우 재검토 기한을 설정하여 지정목적 달성·상실 여부에 대하여 주기적인 검토를 실시	상임위 소위 상정 (23.6.26)
51	농해수	<b>선박안전법</b> (정부, 2122419)	<b>경제형벌규정 개선(2차)</b> 정당한 사유 없이 규정에 따른 공무원의 출입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상임위 상정 (23.9.15)
52	농해수	<b>선원법</b> (정부, 2122419)	<b>경제형벌규정 개선(2차)</b> 선원명부, 선원근로계약서, 취업규칙, 임금대장 및 재해보상 등에 관한 서류를 보관하지 아니한 선박소유자에 대하여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상임위 상정 (23.9.15)
53	농해수	<b>선원법</b> (윤미향, 2119095)	<b>선원 재해보상 압류방지 통장 도입</b> [기존] 기초생활수급급여 등의 경우 수급권 보호를 위한 압류금지 규정이 있더라도 채무불이행 중인 수급자에게 국가가 지급하는 기초생활수급 급여 까지도 압류할 수	상임위 소위회부 (23.2.21)

상임위		법안명	주요내용	추진현황
			있어 선원의 재해보상금에 대한 압류가 가능 [개선] 선원의 양도·압류가 금지된 재해보상 받을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재해보상 수급권을 압류 방지 대상으로 규정하여 선원들이 재해보상금에 대한 압류방지 통장 개설이 가능 하도록 규정	
54	농해수	<b>선원법</b> (☎김철민, 2115200)	<b>선원 태아검진 시간 도입</b> [기존] 임신한 육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74조의2에 따라 임신부 정기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나, 임신한 여성 선원은 보호 대상이 아님 [개선] 임신한 여성선원이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신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사용자에게 청구하는 경우 사용자는 이를 의무적으로 허용	상임위 소위 회부 (22.8.23)
55	농해수	<b>선주상호보험조합법</b> (정부, 2122419)	<b>경제형벌규정 개선(2차)</b> 임원 등의 업무상 배임행위에 대하여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을 조정	상임위 상정 (23.9.15)
56	농해수	<b>수중레저활동법</b> (정부, 2122419)	<b>경제형벌규정 개선(2차)</b> 수중레저사업자의 시설 안전점검, 활동구역 기상 확인, 활동구역 식별표시 등 의무 미이행 등에 적용되던 징역 6개월 또는 벌금 500만원의 형벌 중 징역형을 폐지	상임위 상정 (23.9.15)
57	농해수	<b>수산업협동조합법</b> (정부, 2122419)	<b>경제형벌규정 개선(2차)</b> 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에 대하여 바로 형사처벌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를 먼저 하도록 함	상임위 상정 (23.9.15)
58	농해수	<b>해양심층수법</b> (정부, 2122419)	<b>경제형벌규정 개선(2차)</b> 자료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상임위 상정 (23.9.15)
59	농해수	<b>항만재개발법</b> (☎최인호, 2115434)	<b>항만재개발 실시계획 승인권한 위임</b> [기존] 쇠퇴한 항만구역과 주변지역을 주거·상업 등으로 재개발하는 항만재개발 사업의 실시계획 중 도시계획·건축 등 대부분은 지자체에서 검토해야 하나, 해양수산부에서 모든 승인절차를 진행하여 지연 및 계획 간 상충 발생 [개선] 항만재개발 사업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사업계획 수립 주체가 실시계획을 승인하는 것이 타당. 다만, 항만법 개정으로 지방관리항만에 대한 관리·운영 권한이 지자체로 이양됨에 따라 항만 재개발에 관한 사업 계획 수립 등 일체 권한도 이양 추진	상임위 소위회부 (22.8.23)
60	정무	<b>가맹사업법</b> (☎윤창현, 2119055)  * 국정과제 공통법안	<b>(1차 경제형벌) 가맹본부가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미제공하거나 제공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b>  [기존] 형벌(2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상임위 소위회부 (23.2.20)

상임위		법안명	주요내용	추진현황
			[개선] 과태료( 1천만원 이하)	
61	정무	<b>고엽제법</b> (☎김도읍, 2120664)	<b>고엽제후유증 질병 확대</b> [기존] 고엽제 노출과 질병간의 상관관계 과학적으로 구명된 질병은 고엽제후유증으로 하여 국가유공자로 보상, 고엽제후유증은 상관관계가 밝혀지지 않아 수당과 의료 등 지원 [개선] 고엽제피해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고엽제후유증 질병 일부를 고엽제후유증 질병으로 변경하여 보상과 예우 확대	상임위 회부 (23.6.15)
62	정무	<b>공공재정환수법</b> (정부, 2119747)	<b>오지급된 공공재정지급금 환수에 대한 이자 부과 규정 정비</b> [기존]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공재정지급금이 오지급된 경우에도 환수시 국제 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이자 부과 [개선] 공공재정지급금이 오지급된 경우는 이자 부과 대상에서 제외	상임위 소위원회 (23.5.11)
63	정무	<b>공인회계사법</b> (정부, 2122381)	<b>경제형벌규정 개선(2차)</b> 직무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사무소에 비치하지 아니한 공인회계사를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신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증권선물위원회가 부과 징수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한 위임근거를 신설	상임위 회부 (23.6.1)
64	정무	<b>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b> (☎김희곤, 2119794)  * 국정과제 공통법안	<b>공시부담 완화 및 공시의무 위반시 과태료 면제 근거 마련</b> [기존] ①비상장회사의 중요사항 공시 항목으로 '임원의 변동'이 포함되어 기업집단현황 공시와 중복, ②공시의무 위반시 과태료 부과(동일인 등 1억원 이하, 임직원 등 1천만원 이하) [개선] ①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중 '임원의 현황 및 변동사항' 항목 제외, ②경미한 공시의무 위반시 시정여부, 위반의 정도 및 결과 등을 고려해 과태료를 면제할 수 있는 법령 근거 마련	상임위 소위원회 (23.5.11)
65	정무	<b>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b> (정부, 2122343)	<b>지주회사와 자회사 간의 채무보증 해소 등을 하지 아니하고 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지주회사로 전환한 자에 대하여 형벌을 행정명령하고 시정명령 불이행시 後 형사처벌로 전환 (2차)</b> [기존] 형벌(3년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 [개선] 형벌(3년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조항 삭제하고 행정명령하고, 시정명령 불이행시 後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이하 벌금)  <b>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 중 경쟁사업자 배제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형벌을 행정명령하고, 시정명령 불이행시 後 형사처벌로 전환 (2차)</b> [기존] 형벌(3년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	상임위 회부 (23.5.30)

상임위	법안명	주요내용	추진현황
		<p>[개선] 형벌(3년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조항 삭제하고 先행정명령하고, 시정명령 불이행시 後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이하 벌금)</p>	
		<p><b>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 중 진입제한을 한 자에 대하여 형벌을 先행정명령하고, 시정명령 불이행시 後 형사처벌로 전환(2차)</b></p> <p>[기준] 형벌(3년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p> <p>[개선] 형벌(3년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조항 삭제하고 先행정명령하고, 시정명령 불이행시 後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이하 벌금)</p>	
		<p><b>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 중 사업활동방해를 한 자에 대하여 형벌을 先행정명령하고 시정명령 불이행시 後 형사처벌로 전환(2차)</b></p> <p>[기준] 형벌(3년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p> <p>[개선] 형벌(3년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조항 삭제하고 先행정명령하고, 시정명령 불이행시 後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이하 벌금)</p>	
		<p><b>의결권행사 금지를 위반하고 의결권을 행사한 자에 대하여 형벌 형량을 조정 (2차)</b></p> <p>[기준] 형벌(3년이하 징역 2억원이하 벌금)</p> <p>[개선] 형벌(2년이하의 징역, 1.5억원 이하 벌금)형량 조정</p>	
		<p><b>(2차경제형벌) 조사에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 명령에 따른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나 물건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인 경우 형벌조항을 폐지하고 이행강제금 부과</b></p> <p>[기준] 형벌(2년이상의 징역, 1.5억원이하의 벌금)</p> <p>[개선] 형벌조항을 폐지하고 동법 또는 타법 내 벌칙·제재조항으로 대체규율(자료미제출행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이행강제금 부과)</p>	
		<p><b>(2차경제형벌) 원가 및 경영상황에 관한 보고, 그밖에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명령에 따른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나 물건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인 경우 형벌조항을 폐지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b></p> <p>[기준] 형벌(2년이상의 징역, 1.5억원이하의 벌금)</p> <p>[개선] 형벌조항을 폐지하고 동법 또는 타법 내 벌칙·제</p>	

상임위		법안명	주요내용	추진현황
			재조항으로 대체규율(자료미제출행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이행강제금 부과)	
66	정무	<b>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b> (정부, 2119548)	<b>(1차 경제형벌)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가 주식소유 현황 등을 미신고시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가 채무보증현황을 미신고,허위신고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b> [기존] 형벌(1억원이하 벌금) [개선] 과태료(동일인 등 1억원 이하/임직원 등 1천만원 이하) <b>(1차 경제형벌) 지주회사 사업내용 보고서 미제출 및 허위제출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b> [기존] 형벌(1억원이하 벌금) [개선] 과태료(동일인 등 1억원 이하/임직원 등 1천만원 이하) <b>(1차 경제형벌) 지주회사 설립 또는 전환신고 하지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b> [기존] 형벌(1억원 이하 벌금) [개선] 과태료(동일인 등 1억원 이하/임직원 등 1천만원)	상임위 소위원회 (23.4.6)
67	정무	<b>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b> (정부, 2122837)  * 국정과제 공통법안	<b>기업결합 신속심사를 위한 신고의무 면제대상 확대</b> [기존] 기업결합 신고 의무 규제 적용 범위가 넓어, 기업결합 시 기업의 신고부담 및 행정 비용 과다 [개선] 모회사와 자회사 간의 합병 등 경쟁제한 우려가 없는 기업결합 유형은 신고대상에서 제외하여 신고의무 규제 적용 범위 축소  <b>기업의 자율성 제고를 위한 기업결합 자진시정방안 제출제도 도입</b> [기존] 경쟁제한적 M&A의 경우 공정위가 시정조치 결정 [개선] 글로벌 차원의 M&A의 경우 기업이 시정방안을 제출하고 공정위가 승인하는 방식으로 기업결합 법제 개편  <b>임원겸임에 의한 기업결합 신고 면제</b> [기존] 임원겸임에 따른 기업결합 신고의무 존재 [개선] 지배력 변동 효과가 미미하여 경쟁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1/3 미만 임원겸임에 한하여 신고면제	상임위 회부 (23.6.23)
68	정무	<b>공정거래법</b> (㉔추경호, 2112524)	<b>일반지주회사의 창업기획자 주식 보유 허용</b> [기존] 일반지주회사가 보유가능한 CVC유형이 현행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로 제한 [개선] 일반지주회사가 보유가능한 CVC유형에 창업기획자*를 추가하여 벤처생태계 활성화 도모 * 사업 개시 3년 이내의 초기창업자에 대한 전문보육 및 투자를 주된 업무로 하는 사업자	상임위 소위 상정 (23.6.22)
69	정무	<b>국가유공자법</b> (정부, 2122959)	<b>생활조정수단 직권신청으로 개선</b> [기존] 저소득 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생활조정수당은 신청주의로 규정하고 있어 본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지급 가능	상임위 회부 (23.6.30)
70		<b>보훈보상자법</b> (정부, 2122960)	[개선] 생활조정수당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락되지 않도록 담당공무원이 본인의 동의를 받아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71		<b>참전유공자법</b>		

상임위		법안명	주요내용	추진현황
		(정부, 2122963)		
72		<b>5.18민주유공자법</b> (정부, 2122952)	특 개선	
73		<b>특수임무유공자법</b> (정부, 2122964)		
74		<b>고엽제법</b> (정부, 2122954)		
75	정무	<b>대규모유통업법</b> (정부, 2119556)	(1차 경제형벌) 납품업자 등에게 배타적거래를 하도록 하거나 다른 사업자와 거래를 방해시 형벌을 先행정명령하고 시정명령 불이행시 後 형사처벌로 전환  [기존] 형벌(2년이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 벌금) [개선] 형벌(2년이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 벌금) 조항 삭제하고, 先행정명령(관련 납품대금과 위반금액 등 고려하여 과징금 부과, 시정명령)하고, 시정명령 불이행시 後 형사처벌(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 벌금)	상임위 소위원회 (23.4.6)
76	정무	<b>방문판매법</b> (정부, 2122347)	<b>다단계·후원방문판매업자의 청약철회대금 환급 지급의 무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형벌을 先행정명령하고 시정명령 불이행시 後 형사처벌로 전환 (2차)</b>  [기존] 형벌(3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이하 벌금)  [개선] 형벌(3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이하 벌금)조항 삭제하고 先행정명령하고, 시정명령 불이행시 後 형사처벌(3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이하 벌금) <b>정보공개 관련 자료제출 불응 등을 한 다단계판매업자에 대하여 형벌을 先행정명령하고 시정명령 불이행시 後 형사처벌로 전환 (2차)</b>  [기존] 형벌(1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  [개선] 형벌(1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조항 삭제하고 先행정명령하고, 시정명령 불이행시 後 형사처벌(1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	상임위 회부 (23.5.30)
77	정무	<b>상호저축은행법</b> (정부, 2122381)	<b>경제형벌규정 개선(2차)</b>  자기자본을 초과하여 차입한 자에 대하여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신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상임위 회부 (23.6.1)
78	정무	<b>신용협동조합법</b> (정부, 2122381)	<b>경제형벌규정 개선(2차)</b>  금융위원회의 경영관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자료의 제출,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을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을 조정	상임위 회부 (23.6.1)
79	정	<b>자본시장법</b>	<b>공모 상장형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b>	상임위

상임위		법안명	주요내용	추진현황
	무	(정부, 2115770)  * 국정과제 공통법안	[기존] 주요 모험자본 투자기구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어, 상장 이전의 벤처·혁신기업에 집중투자하는 투자기구가 필요  [개선] 인가·설정·운용·회수의 쉰단계에 걸쳐 공·사모 펀드의 장점*을 융합한 형태의 '공모 상장형 기업성장집합 투자기구(BDC)' 도입  * 장점: 대출과 차입의 허용	소위 상정 (23.7.4)
80	정무	<b>전자금융거래법</b> (윤관석, 2105855)	<b>용역 거래 안심결제 시스템(결제대금 예치업 진입요건 완화)</b>  [기존] 현재 「전자금융거래법」상 결제대금 예치업 등록을 위한 최소 자본금 요건이 과도하게 규율되어 있어 신규 업종 진입에 제한  [개선] 자본금 요건 등을 개선하여 결제대금예치업 진입 규제를 완화	상임위 소위 상정 (21.6.23)
81	정무	<b>하도급법</b> (정부, 2119551)	<b>(1차 경제형벌) 건설위탁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공사대금 지급을 미보증할시 형벌을 先행정명령하고 시정명령 불이행시 後 형사처벌로 전환</b>  [기존] 형벌조항(하도급대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 벌금)  [개선] 형벌(하도급대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 벌금)조항을 삭제하고 先행정명령(하도급대금의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의 과징금 부과, 시정명령)하고, 시정명령 불이행시 後 형사처벌(1억 5천만원 이하 벌금)  <b>(1차 경제형벌)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 등을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미통지시 형벌을 先행정명령하고 시정명령 불이행시 後 형사처벌로 전환</b>  [기존] 형벌(하도급대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 벌금)조항  [개선] 형벌(하도급대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 벌금)조항을 삭제하고 先행정명령(하도급대금의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의 과징금 부과, 시정명령)하고, 시정명령 불이행시 後 형사처벌(1억 5천만원 이하 벌금)  <b>(1차 경제형벌)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내국신용장 미개설 또는 구매확인서 미발급시 형벌을 先행정명령하고 시정명령 불이행시 後 형사처벌로 전환</b>  [기존] 형벌조항(하도급대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 벌금)  [개선] 형벌(하도급대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 벌금)조항을 삭제하고 先행정명령(하도급대금의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의 과징금 부과, 시정명령)하고, 시정명령 불이행시 後 형사처벌(1억 5천만원 이하 벌금)	상임위 소위회부 (23.4.6)
82	국토	<b>건설기계관리법</b> (정부, 2122449)	<b>경제형벌규정 개선(2차)</b>  건설기계 조종사가 음주 또는 약물 투여 상태에서 건설기계를 조종하는 것을 말리지 아니한 고용주를 형사처벌	상임위 소위 회부 (23.9.7)



상임위		법안명	주요내용	추진현황
			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기존의 양벌규정을 적용, 매매용 건설기계를 운행·사용한 자에 대하여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신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	
83	국토	<b>공동주택관리법</b> (정부, 2122449)	<b>경제형벌규정 개선(2차)</b>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자치관리 시 기술인력 또는 장비를 갖추지 아니하고 관리행위를 한 경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주택관리사등을 배치하지 아니한 경우 등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상임위 소위 회부 (23.9.7)
84	국토	<b>공인중개사법</b> (정부, 2122449)	<b>경제형벌규정 개선(2차)</b> 규정을 위반하여 정보를 공개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상임위 소위 회부 (23.9.7)
85	국토	<b>국토계획법</b> (☎김정재, 2120320)	<b>민간의 자유로운 도시개발계획 허용</b>  [기존] 현행 용도지역제 하에서 입지·규모에 제한없이 자유롭게 계획하고 개발할 수 있는 자율·창의적 도시공간 부재  [개선] 용도지역제에 따른 도시·건축 규제 적용없이 민간이 직접 제안하고 개발하는 혁신적인 도시공간(도시혁신계획구역) 조성	상임위 소위 회부 (23.4.20)
86	국토	<b>도시개발법</b> (☎김병기, 2118044)	<b>도시개발사업에 통합심의 도입</b>  [기존] 도시개발구역 지정 시 재해영향성 검토, 경관심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각각 별도로 이행하여야 함에 따라 위원회 간 상충되는 의견처리가 곤란하고 심의이행에 장기간 소요  [개선] 목도시개발구역 지정 시 지정권자가 각종 심의를 통합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추진 절차 간소화	상임위 소위 회부 (23.2.15)
87	국토	<b>도시교통정비촉진법</b> (정부, 2122417)	<b>경제형벌규정 개선(2차)</b> 준공된 시설물의 소유자 및 관리자의 이행의무사항에 대한 변경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신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상임위 소위 회부 (23.9.7)
88	국토	<b>물류시설법</b> (정부, 2119641)	<b>경제형벌규정 개선</b> 공사시행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상임위 소위 회부 (23.4.20)

상임위		법안명	주요내용	추진현황
			물류터미널 건설 공사를 시행한 자에 대해 형벌규정 삭제(제17조 제1항 제5호의 사업정지로 제재)	
89	국 토	<b>물류정책기본법</b> (정부, 2122417)	<b>경제형벌규정 개선(2차)</b>  조정의 권고를 위해 물류거래 분쟁신고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 및 위반 여부 판단 등을 위한 자료 제출 시 거짓으로 한자, 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등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신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를 부과	상임위 소위 회부 (23.9.7)
90	국 토	<b>자동차관리법</b> (정부, 2119639)	<b>경제형벌규정 개선</b>  자동차매매업자가 매매용 자동차가 사업장에 제시되거나, 팔리거나, 팔리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된 사실을 지자체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형벌(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과태료(1천만원 이하)로 전환	상임위 소위 회부 (23.4.20)
91	국 토	<b>주택법</b> (☎이종배, 2119207)	<b>토지임대부주택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b>  [기존] 토지임대부 주택을 분양받은 경우 LH에게만 환매 해야하고, 일부 택지의 경우 토지임대료가 지나치게 낮 게 책정되는 등 사업 추진에 어려움  [개선] 환매조건 및 토지임대료 산정 등 토지임대부 주 택 사업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개선	상임위 소위 상정 (23.4.26)
92	국 토	<b>주택법</b> (☎김정재, 2116990)	<b>거주의무 이행요건 완화</b>  [기존] 거주의무 이행을 위해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거주 의무 기간동안 반드시 거주하여야 함.  [개선] 해당 주택 양도(매도, 증여)전 거주의무를 이행하 도록 하여 입주시기를 거주 의무자가 결정할 수 있도록 완화	상임위 소위 상정 (23.5.30)
93	국 토	<b>토지보상법</b> (☎최인호, 2121282)	<b>공익성 협의 권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이양</b>  [기존] 토지보상법 제21조에 따라 토지수용 재결 사전절 차인 사업인정을 위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공익성 협 의절차 필요  [개선] 시군구가 사업시행자인 사업의 경우에는 지방토 지수용위원회가 공익성 협의를 담당하도록 공익성 협의 권한 일부 이양	상임위 소위 회부 (23.6.29)
94	국 토	<b>항공안전법</b> (정부, 2122417)	<b>경제형벌규정 개선(2차)</b>  검사 또는 출입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신 500만원 이하의 과태 료를 부과	상임위 소위 회부 (23.9.7)
95	교 육	<b>산학협력법</b> (☎서병수, 2122221)	<b>대학 기술지주회사 제도개선</b>  [기존] 대학 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의 기술사업화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유인 부족  [개선] 기술지주회사 설립인가 요건인 현물출자비율(현재 30%) 완화, 자회사 설립형태 요건(현재 주식회사·유한회사) 완화 등 제도개선	상임위 소위 회부 (23.7.28)
96	기 재	<b>관세법</b> (정부, 2122348)	<b>(2차 경제형벌) 세관공무원의 질문에 대한 거짓 진술 등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 (1호)</b>	상임위 회부

상임위	법안명	주요내용	추진현황
		<p>[기존] 세관공무원의 질문에 대하여 거짓의 진술을 하거나 그 직무의 집행을 거부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해 1천만원의 벌금에 처함</p>	(23.5.30)
		<p>[개선] 세관공무원의 질문에 대하여 거짓의 진술을 하거나 그 직무의 집행을 거부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해 과태료 2천만원 이하로 전환</p>	
		<p><b>(2차 경제 형벌) 세관공무원의 자료제출 요구 거부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b></p>	
		<p>세관공무원의 장부 또는 자료의 제시요구 또는 제출요구를 거부한 자에 대해 벌금 1천만원에 처하도록 한 기존규정을 과태료 2천만원 이하로 전환</p>	
		<p><b>(2차 경제 형벌) 명령 미이행 또는 거짓 보고 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b></p>	
		<p>[기존] 서류의 제출·보고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보고를 한 자에 대해 벌금 1천만원에 처함</p>	
		<p>[개선] 서류의 제출·보고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보고를 한 자에 대해 과태료 2천만원 이하로 전환</p>	
		<p><b>(2차 경제 형벌) 운송수단의 출발 중지 또는 진행 정지 관련 조치 위반 등의 경우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b></p>	
		<p>[기존]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대한민국이 체결한 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따른 의무를 포함한다)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운송수단의 출발을 중지시키거나 그 진행을 정지시킬 수 있는데 이에 따른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조치를 위반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해 벌금 1천만원 처함</p>	
		<p>[개선] 관세법에 따른 명령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운송수단의 출발을 중지시키거나 그 진행을 정지시킬 수 있는데 이에 따른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조치를 위반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해 과태료 2천만원 이하로 전환</p>	
		<p><b>(2차 경제 형벌) 종합보세구역에 출입하는 인원, 차량 등의 출입 통제 등 관련 조치 위반 등의 경우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b></p>	
		<p>[기존] 관세법 제203조제1항에 따라 세관장은 관세채권의 확보, 감시·단속 등 종합보세구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종합보세구역에 출입하는 인원과 차량 등의 출입을 통제하거나 휴대 또는 운송하는 물품을 검사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다른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조치를 위반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해 벌금 1천만원 처함</p>	

상임위		법안명	주요내용	추진현황
			[개선] 종합보세구역에 출입하는 인원과 차량 등의 출입을 통제하거나 휴대 또는 운송하는 물품을 검사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다른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조치를 위반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해 과태료 2천만원 이하로 전환	
97	기재	<b>국가재정법</b> (☎박형수, 2119214)  * 국정과제 공통법안	<b>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대규모 사업의 총사업비 규모의 합리적 조정</b>  [기존] 국가 및 지자체는 대규모* 신규 사업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 후 재정투자 타당성이 검증된 경우에 한하여 예산 반영 가능  * 총사업비 500억원↑·국비 지원 300억원↑ 건설 사업 등  [개선] 경제성장 및 국가재정규모 확대 추이 등을 고려,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비 기준의 합리적 조정	상임위 소위 의결 (23.4.12) 대안반영폐기
98	기재	<b>공공기관운영법</b> (☎류성걸, 2122516)	<b>공기업·준정부기관 발주계약에도 부정당업자 대상 입찰참가제한을 같음하는 제재금 제도 도입</b>  [기존]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의 경우 국가와 달리 입찰참가제한을 같음하는 제재금 제도 없음*  * 현재 국가·지자체의 경우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 입찰참가제한 처분 대신 과징금 부과 가능  - 동일 위반행위에 대해 발주기관별(국가vs공기업 등) 제재가 달라져 형평성 문제 발생 가능성  [개선] 공기업·준정부기관 발주계약에 국가 과징금 제도와 유사한 입찰참가제한을 같음하는 '제재금' 제도* 도입  *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 부정당업자가 제재금을 내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을 수 있음	상임위 회부 (23.6.8)
99	기재	<b>물가안정법</b> (정부, 2122345)	<b>경제형벌규정 개선(2차)</b>  물가안정법의 목적 달성을 위한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신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상임위 상정 (23.11.13)
100	기재	<b>영업초조합법</b> (정부, 2119559)	<b>(1차 경제 형벌) 등기를 게을리하거나 부정한게 한 경우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b>  [기존] 영업초조합법 제13조에 따라 조합은 그 설립허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하며, 등기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도 30일 내에 변경등기를 해야 하는데 이에 따른 등기를 게을리하거나 부정한 등기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함  [개선] 영업초조합법 제13조에 따른 등기를 게을리한 하는 경우 과태료 200만원 이하로 전환 (※ 부정한 등기의 경우는 현행 유지)	상임위 소위 회부 (23.4.17)

상임위		법안명	주요내용	추진현황
			<p><b>(1차 경제 형벌) 조합등이 감독기관 등에 거짓 보고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b></p> <p>[기존] 조합이나 중앙회의 임원 또는 청산인이 감독기관, 총회, 대의원회 또는 이사회에 거짓 보고를 하거나 사실을 숨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p> <p>[개선] 조합이나 중앙회의 임원 또는 청산인이 감독기관, 총회, 대의원회 또는 이사회에 거짓 보고를 하거나 사실을 숨긴 경우 과태료 200만원 이하로 전환</p> <p><b>(1차 경제 형벌) 관계 공무원의 검사 거부 등의 경우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b></p> <p>[기존] 기획재정부장관은 조합 및 중앙회를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명령을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조합 및 중앙회의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할 수 있으며 이때 관계 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함</p> <p>[개선] 관계 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과태료 200만원 이하로 전환</p>	
101	문 체	<b>관광진흥법</b> (정부, 2122337)	<p><b>경제형벌규정 개선(2차)</b></p> <p>카지노기구의 형상·구조·재질 및 성능 등에 관한 공인기준 등에 따른 검사합격증명서를 훼손하거나 제거하는 경우 등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신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등</p>	상임위 상정 (23.9.20)
102	문 체	<b>문화재수리법</b> (정부, 2123529)	<p><b>문화재 수리의 설계승인 대상 구체화</b></p> <p>[기존] 지정문화재 및 임시지정문화재 등의 수리는 문화재청장 또는 시·도지사의 설계승인을 받아야 함</p> <p>[개선]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문화재수리는 설계승인을 받지 않아도 됨을 명확히 함정</p>	상임위 상정 (23.9.20)
103	문 체	<b>문화재영향진단법</b> <sup>제정</sup> (☎김승수, 2119032)  * 국정과제 공통법안	<p><b>문화재 주변 행위 규제개선</b></p> <p>[기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문화재 지표조사'와 '현상변경 허가'의 이원화된 규제로 허가 등 지연</p> <p>[개선] 개발예정지역의 문화재 지표조사 수행시 문화재 주변경관에 미치는 영향검토를 동시에 실시, 영향진단 결과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이 없으면 허가 의제 처리</p>	상임위 소위 회부 (23.2.9)
104	문 체	<b>저작권법</b> (정부, 2122329)	<p><b>경제형벌규정 개선(2차)</b></p> <p>저작재산권자 등 표지의무를 위반한 배타적발행권자와 출판권자에 대하여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p>	상임위 상정 (23.9.20)
105	문 체	<b>저작권법</b> (☎이용호, 2117990)  * 국정과제 공통법안	<p><b>빅데이터 관련 저작물 이용 편리화</b></p> <p>[기존] 빅데이터 정보분석 과정에서 저작물의 복제 및 전송이 수반되는 경우에 저작권 침해 여부가 불명확하여 정보 분석 및 활용에 제약</p>	상임위 소위 상정 (23.5.24)

상임위		법안명	주요내용	추진현황
			[개선] 정보 분석 과정에서 저작권자의 이용허락 없이도 저작물의 이용이 가능하도록 면책규정 신설	
106	교육	<b>고등교육법</b> (☎한무경, 2108152)	<b>창업휴학제 안착을 위한 학사제도 개편</b> [기존] 창업휴학의 허용 여부는 대학의 자율 결정 사항으로 대학 자체규정으로 운영 [개선] 창업 활동을 고등교육법상 휴학 사유로 추가하여 창업휴학제 안착 지원	상임위 소위 상정 (22.9.16)
107	교육	<b>고등교육법</b> (정부, 2116979)  * 국정과제 공통법안	<b>학습경험인정제 확산</b> [기존] 동일 학교·연구기관 또는 산업체에서 근무한 경험이나 성인학습자의 다양한 학습 경험을 학점으로 인정하는 것에 대해 법령해석 상 이견 발생 [개선] 학교에서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는 학생의 경험을 포괄적으로 확대	상임위 소위 회부 (22.11.21)
108	행안	<b>경비업법</b> (☎이채익, 2117928)	<b>경비업법상 허가 가능한 경비업종 추가</b> [기존] 경비업법상 5종(시설·호송 등)의 경비업무에 대해서만 경비업 허가 가능 [개선] 지역축제 등 다중운집 행사 시 민간경비원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기존 경비업무에 혼잡·교통유도경비업을 추가	상임위 의결 (23.11.14)  대안반영폐기
109	행안	<b>도로교통법</b> (☎이만희, 2119252)	<b>무인단속용 장비 설치권한 확대</b> [기존]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권한이 경찰 및 지자체에만 부여 [개선]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권한을 도로관리청 및 도로관리자까지 확대하여 원활한 장비 설치와 교통사고 예방 기대	상임위 소위 회부 (23.3.22)
110	행안	<b>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b> (정부, 2122310)	<b>개수·개선 또는 시정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 대한 형벌규제 완화(2차)</b> [기존] 경찰청장이나 시도경찰청장의 영업시설 등의 개수·개선 또는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개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청장 또는 시·도경찰청장이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도록 완화 <b>출입, 검사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에 대한 형벌규제 완화 (2차)</b> [기존] 출입, 검사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개선]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로 형벌규제 완화	상임위 상정 (23.9.20)
111	행안	<b>소방시설공사업법</b> (정부, 2122309)	<b>경제형벌규정 개선(2차)</b> 감리업자의 보완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등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신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등	상임위 상정 (23.9.20)
112	행안	<b>온천법</b> (정부, 2122307)	<b>경제형벌규정 개선(2차)</b> 정기적으로 시장·군수가 하는 수질검사 및 성분검사를	상임위 상정 (23.9.20)

상임위		법안명	주요내용	추진현황
			받지 않는 자 등에 대하여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신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등	
113	행안	<b>자연재해대책법</b> (정부, 2122322)	<b>경제형벌규정 개선(2차)</b>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자, 위탁받은 전문교육과정의 출석일수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교육과정을 운영한 자에 대하여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상임위 상정 (23.9.20)
114	행안	<b>재해경감법</b> (정부, 2122322)	<b>경제형벌규정 개선(2차)</b>  재해경감활동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재해경감 우수기업의 인증을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이를 표시하거나 인증에 관하여 거짓광고를 한 자, 위탁받은 전문교육과정의 출석일수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미수료자에게 수료증을 발급하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교육과정을 운영한 자에 대하여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상임위 상정 (23.9.20)
115	행안	<b>재해위험법</b> (정부, 2122322)	<b>경제형벌규정 개선(2차)</b>  사업시행자가 토지에의 출입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를 방해한 자, 개선사업에 관한 업무 검사를 거부·기피·방해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자 등에 대하여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신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등	상임위 상정 (23.9.20)
116	행안	<b>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b> (정부, 2119560)	<b>경제형벌규정 개선</b>  도지사 허가 없이 보존자원을 매매하거나 제주자치도 밖으로 반출한 자에 대해  예비·음모범을 기수범(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준하여 처벌 → 예비·음모범 법정형을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개정	상임위 소위 회부 (23.4.25)
117	행안	<b>주민등록법</b> (정부, 2122833)  * 국정과제 공통법안	<b>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b>  [기존] 플라스틱 기반 실물 주민등록증은 분실·파손 등 활용에 불편함 발생  [개선] 온·오프라인에서 편리하고 안전하게 신원 증명 가능하도록 실물 주민등록증과 효력이 동일한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	상임위 상정 (23.9.20)
118	여가	<b>청소년기본법</b> (☎박주민, 2113371)	<b>청소년지도사 및 상담사 결격사유 완화</b>  [기존]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경우 등을 취업상 결격사유로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파산신청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완화할 필요  [개선] 청소년지도사 및 상담사 결격사유 중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자'는 제외하도록 추진	상임위 상정 (22.9.16.)
119	과기	<b>전기통신사업법</b> (☎김영주, 2117605)	<b>알뜰폰 관련 통신망 도매제공 의무 연장</b>	상임위 상정

상임위		법안명	주요내용	추진현황
			<p>[기존] 알뜰폰 시장의 경쟁 촉진을 위해 도입한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서비스 도매제공의무 일몰기간 만료('22. 9월)</p> <p>[개선]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서비스 도매제공의무 연장</p>	(23.9.20)
120	환노	<b>고령자고용법</b> (☎김형동, 23503)	<p><b>고령자 고용촉진 제도 합리화</b></p> <p>[기존] 300인 이상 기업은 업종에 따른 기준고용률 이상 고령자를 고용하도록 노력 의무 부과 * 제조업 2%, 운수업·부동산 및 임대업 6%, 기타업종 3%</p> <p>[개선] 기준고용률 이상의 고령자 고용 노력의무 규정 삭제</p>	상임위 회부 (23.07.28)
121	환노	<b>청년고용촉진특별법</b> (☎지성호, 2123408)	<p><b>청년고용법에 따른 청년 연령범위 확대</b></p> <p>[기존] 청년고용법은 청년을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으로 규정하고 예외적으로 공공기관 채용시 등에 대해 34세 이하로 적용 - 청년고용법은 청년을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규정한다 타 법률과 달리 '15세 이상 29세 이하'로 규정하여 현상 혼선 초래</p> <p>[개선] 타 법령과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청년의 연령 범위를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확대</p>	상임위 상정 (23.9.13)